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2월 8일 이덕현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0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4) 상정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자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 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으로 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 문화상 시상부문은 몇 개 분야인가? ○ 문화상 수상 대상자 중 공동 수상자로 결정은 몇 번 했는가? ○ 공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할 경우 짧은 기간에도 공적이 지대한 시민의 경우 제외가 되는 사례가 발생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6개 분야임. ○ 금년까지 총 4번의 공동 수상이 있었음. ○ 수상자의 결정을 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공적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제외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재 수상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20여년 이상 공적을 가진 분들이 추천이 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70호
의 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제안년월일 : 2005. 12. 8 .

제 안 자 : 이덕현의원 등 10인

1. 제안이유

○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에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자의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나. 부천시 문화상 문화예술 부문의 수상자 선정기준을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창의적인 연구 활동 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으로 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문화상조례”를 “부천시 문화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중 “3년이상”을 각각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연예부문 전반에 대하여”를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문화상조례	부천시 문화상 조례
제5조(수상대상자) ①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 또는 관내의 각급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하면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3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수상대상자) ①---------- 5년 이상 ---------- ---------- ---------- ---------- ------ 5년 이상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수상자 선정) ① (생 략)	제7조(수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수상자는 부문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며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당해 부문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연구 활동등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2.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및----------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